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26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안상훈 · 이종배 · 이종욱
진종오 · 안철수 · 배준영
김승수 · 이양수 · 김성원
한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

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 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를 “미리 그 직권신청 계획안(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정보등에 대한 조사 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6항) 중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로 한다.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를 둔다.

⑦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신청 계획안을 보고받은 보장기관의 장(보장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만한다)은 해당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당 직권신청 계획안을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직권신청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⑧ 소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시·도사회보장위

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⑨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이 시·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7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해당 직권신청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심의를 요청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에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포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② (생 략)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u>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u>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 자는 <u>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u>----- ----- ----- ----- ----- ----- ----- ----- -----<u>미리 그 직권신청 계획안</u> <u>(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u> <u>정보등에 대한 조사 계획안을</u> <u>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u> <u>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u> <u>하며, 보고를 받은 보장기관의</u> <u>장은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u> <u>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u> <u>권신청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u> <u>다.</u></p> <p>1. <u>지원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u> <u>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u> 2. <u>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u></p>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를 둔다.

⑦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신청 계획안을 보고받은 보장기관의 장(보장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 한한다)은 해당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당 직권신청 계획안을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신 설>

<신 설>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청을 받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직권신청 계획안
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⑧ 소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시·도사회
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
으로 본다.

⑨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
원장(위원장이 시·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7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에게 알리고, 해당 직권신청 계획
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
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심의를
요청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
려야 한다.

⑩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제53조의3(사회보장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
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보
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
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포상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혜택
을 부여할 수 있다.